#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71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최형두·강선영·김석기

김예지 · 정동만 · 김상욱

김기현 • 박형수 • 안철수

최수진 • 고동진 • 김소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현행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운영되어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매입할만한 재정적 여력 없어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안정적인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한국해 양과학기술원의 국공유재산 무상대부기간 및 대부기간 종료 후 분할 납부에 관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각각 '21. 8. 31.. '23. 8. 16.에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중임.

## 주요내용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물품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매각할 수 있음(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나.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4조제3항).
- 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할 수 있음(안 제4조제4항).

라. 특정연구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제5항).

#### 법률 제 호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① 국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법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이 제4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대하여도적용한다.

혀 했

제4조(국유재산의 무상 양도 등) 제4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허 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국유재산 을 무상(無償)으로 양도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대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안

가 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 ① 국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 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특정연구기관 및 공 동관리기구에 대하여 「국유재 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 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 관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 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 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 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 유 ·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 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 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 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도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3 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 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 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 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3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 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연구기관이 제4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 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 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 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